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93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 : 엄태영 • 박덕흠 • 유상범

서천호 · 강명구 · 권성동

권영진 · 김태호 · 조지연

박정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90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이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음.

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을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u>대</u>	과 해제) ① <u>농지</u>		
<u>통령령</u>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		
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	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u>대통령령</u>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